

서울특별시 성동구 야외운동기구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1740
----------	------

제출연월일: 2022. 1. .

제 출 자: 성동구청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성동구 야외운동기구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명문화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사고의 예방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성동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규정(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나. 조례의 적용범위 규정(안 제3조)
- 다. 야외운동기구 등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4조)
- 라. 야외운동기구 등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 규정(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 마. 야외운동기구 등의 관리주체 규정(안 제7조)
- 바. 야외운동기구 등의 관리를 위한 시설 안내문 게시, 안전점검, 유지관리, 관리대장 작성 규정(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사.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규정(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1. 12. 23. ~ 2022. 1.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동구 야외운동기구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 등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 사람의 신체 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야외에 설치된 골대, 농구대, 네트, 지주 등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 등을 공원, 하천변, 산책로, 공터 등에 설치하여 상시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영조물배상”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에 대한 배상을 말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 등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구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원, 하천변, 산책로, 공터 등에 설치한다.
2. 야외운동기구 등 설치로 인해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제6조(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 등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검토한 후 설치한다.

-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등을 일반적인 안전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주체) 야외운동기구 등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안내문 게시)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등에 별표의 시설 안내문(이하 “안내문”이라 한다)을 부착하여야 한다.

-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

고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 등의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야외운동기구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유지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방치되어 있는 야외운동기구 등을 철거할 수 있다.

제11조(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등을 설치, 보수, 철거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등 관리대장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등의 설치 후 야외운동기구 등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별표]

시설 안내문(제8조 관련)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관리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기 구 명	
설치연월일	
관리부서	
연 락 처	

[별지 서식]

(앞면)

야외운동기구 등 관리대장 (제11조 관련)

		관리번호	성 동 구 -		
시 설 명					
위 치					
설치면적	㎡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설치현황	“전경사진”				
	기 구 명	수량	단가	금액	설치연월

(뒷면)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내용
		직급	성명	
관리현황				

서울특별시 성동구 야외운동기구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제9조(안전점검), 제12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 성동구 내 야외운동기구 등 안전점검 및 정밀점검 경비
 - 야외운동기구 등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사업 추진 경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야외운동기구 등 안전점검 및 정밀점검 정비 사업 규모,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사업 등록 내용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이 유동적이므로 비용추계가 불가함

4. 작성자

- 문화체육과 행정7급 최영락 (02-2286-5212)

< 관 계 법 규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2021. 5. 18.>

④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2021. 5. 18.>

[제목개정 2015. 2. 3.]

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8.]